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3세 미만 사람 대상 성폭력범죄의 타법 이관〉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36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현행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유형과 규율	7
3. 13세 미만 사람 대상 성폭력범죄의 타법 이관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2. 28.
3. 회 부 일 : 2025. 3. 4.

II. 제안이유 등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므로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7조 삭제 및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5조의2, 제21조제3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u>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 <u>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u> <u>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u>	<u><삭 제></u>

현행	개정안
<u>나 도구를 넣는 행위</u> ③ <u>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 ④ <u>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u> ⑤ <u>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u>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u>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② (생략)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u>제6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6조의 미수범</u>----- ----- -----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u>제7조까지</u> , 제15조 (제3조부터 <u>제7조까지의</u> 미수 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 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 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 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 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 ----- <u>제6조까지</u> , <u>제15조</u> ----- ----- <u>제6조까지의</u>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6조</u> , <u>제7조</u> 또는 제15조 (<u>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u> 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 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 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③ <u>제6조</u> 또는----- - <u>제6조의 미수범</u> ----- ----- ----- ----- ----- ----- ----- -----.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u>제7조까지의</u> 죄를 범할 목적으 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 <u>제6조</u> ----- ----- ----- -----.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u>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1. (생략) 2. <u>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u> 3. (생략) ④ (생략)	③ <u>신체적인</u>-----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6조제2항, 제8조</u>-----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2. 현행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유형과 규율

가.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주요 유형

□ 「형법」 제32장은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제목 아래 강간, 강제추행 등 개인이 가지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간음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폭행·협박으로 의사가 제압된 사람을 간음한 때 성립함(「형법」 제297조).¹⁾²⁾

- 이러한 기본적인 강간을 중심으로 하여, 주체, 대상, 의사 제압 방법 및 간음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행위의 태양이나 불법성이 달라지면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준강간(「형법」 제299조), 의제강간(「형법」 제305조) 등의 수정 구성요건이 적용됨.³⁾

1)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여기서 간음이란 기본적으로 성기(性器) 간의 결합으로 이해되고 있음.

3)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 강제추행은 간음에는 이르지 아니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 성립함(「형법」 제298조).⁴⁾⁵⁾

- 이러한 기본적인 강제추행을 중심으로 하여, 주체, 대상, 추행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행위의 태양이나 불법성이 달라지는 경우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 등의 수정 구성요건이 적용됨.

○ 이러한 각 강간과 추행의 죄로부터 중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해당죄와 다른 범죄가 결합하는 등의 경우 다시 가중적 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 「형법」은 그러한 예로 강간등상해·치상(제301조), 강간등살인·치사(제301조의2), 강도강간(제339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⁶⁾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4)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한 후 추행행위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음.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6)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규율

□ 성적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개별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강간과 추행의 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도 규율되고 있음.

○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에서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과 추행의 죄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모두에 포함됨.⁷⁾

- 또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과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는 모두 성폭력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절차상의 특례가 적용됨.

○ 성폭력처벌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특수강간·강제추행,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사람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3조부터 제11조까지).⁸⁾

7) 성폭력처벌법은 폭력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의 성적 법익과 관련된 범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 법률에서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도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님.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각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며,

8)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 ⑤ (생략)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⑦ (생략)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 ③ (생략)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강간과 추행의 죄는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가중적 처벌규정이므로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됨.⁹⁾

<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유형 >

구 분	근거 법률	대상 범죄
제1항제1호	형법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음화제조등, 공연음란
제1항제2호	형법	추행·간음·성매매 등 목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제1항제3호	형법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제1항제4호	형법	강도강간
제1항제5호	성폭력처벌법	특수강도강간등,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등,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등
제2항	기타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제1항 각 호의 범죄

9) 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2. (생략)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따라서 각종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절차상의 특례가 적용됨.

-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16조), 고소 제한의 예외(제18조), 「형법」상 심신장애감경 등 미적용(제20조) 및 공소시효의 특례(제21조) 등이,¹⁰⁾

10) 성폭력처벌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 ⑨ (생략)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생략)

-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담조사제(제26조),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에서의 특례(제27조), 전담재판부(제28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제29조), 심리의 비공개(제31조) 및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제32조) 등이 인정됨.¹¹⁾

11) 성폭력처벌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 ④ (생략)

□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과 다른 법률에 의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동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며, 「형법」상 심신장애감정 등 미적용(제19조) 및 공소시효의 특례(제20조) 등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됨.¹²⁾

○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추행의 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음(제7조 등).¹³⁾

12)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한 내용의 특례를 다수 규정하고 있음.

13)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 다만, 강간 및 강제추행에 관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는데, 성폭력 처벌법 제7조는 같은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됨.¹⁴⁾

□ 한편,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도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하여 처벌 및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등),¹⁵⁾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두고 있음.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법정형도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경우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음.

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2. (생략)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 6. (생략)

②. (생략)

3. 13세 미만 사람 대상 성폭력범죄의 타법 이관

가. 검토의견

- 개정안에 따라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성폭력처벌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이관할 것인지는 개정안의 취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규율 현황 및 관련 법률안의 내용과 심사경과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¹⁶⁾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 범죄를 어떠한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를 청소년성보호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적용에서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며,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16) 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등.

□ 현재 강간과 추행의 죄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범자가 개별 사안에 적용될 규정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¹⁷⁾

○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 중에서 13세 미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① 강간, ② 유사강간, ③ 강제추행, ④ 준강간, ⑤ 준강제추행, ⑥ 위계·위력간음 및 ⑦ 위계·위력추행 등의 범죄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인데, 이들 각 범죄는 대상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

- 위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은 기본적으로는 대상자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반면,¹⁸⁾ 청소년성보호법은 대상자를 아동·청소년에 제한하고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를 13세 미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상자의 연령 차이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범죄임에도 각 법률이 정한 법정형은 상이한데, 대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법정형이 높음.

17) 이러한 이유에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혼재된 여러 구성요건을 정비하여 「형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음. 이강민,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체계적 정비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1권 제4호 (2017. 6.); 김용수, 성범죄 규정의 정비방안,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78집 (2022. 2.).

18) 「형법」 제302조에 따른 위계·위력간음 등은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로 제한됨.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상자 연령별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법정형 >

구 분		13세 미만 (성폭력처벌법)	13세-19세* (청소년성보호법)	기 타 (형 법)
강간	폭행·협박, 간음	무기/유기 10년 ↑	무기/유기 5년 ↑	유기 3년 ↑
유사강간	폭행·협박, 성기와 비성기의 결합	유기 7년 ↑	유기 5년 ↑	유기 2년 ↑
강제추행	폭행·협박, 추행	유기 5년 ↑	유기 2년 ↑/ 1,500~3,000만원	10년 ↓/ 1,500만원 ↓
준강간	심신상실상태이용, (유사)간음	무기/유기 10년 ↑, 유기 7년 ↑	무기/유기 5년 ↑, 유기 5년 ↑	유기 3년 ↑, 유기 2년 ↑
준강제추행	심신상실상태이용, 추행	유기 5년 ↑	유기 2년 ↑/ 1,500~3,000만원	10년 ↓/ 1,500만원 ↓
위 계·위 력 간음	위계·위력, (유사) 간음	무기/유기 10년 ↑, 유기 7년 ↑	무기/유기 5년 ↑, 유기 5년 ↑	5년 ↓
위 계·위 력 추행	위계·위력, 추행	유기 5년 ↑	유기 2년 ↑/ 1,500~3,000만원	5년 ↓

* 舊 청소년성보호법(2024. 10. 26. 법률제20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19세 되는 해(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그 개정 전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였으나 19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됨.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청소년성보호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관련된 규율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미성년자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을 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이관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전부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 대상 의제강간
등의 죄는 여전히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남게 되므로,¹⁹⁾ 그 의미가
제한적임.

○ 의제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포함되고 있음.²⁰⁾

19)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20) 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2. (생략)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 5. (생략)

② (생략)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13세 미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등 범죄 관련 규정을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이관할지 여부는 입법취지,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체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